

1. 개정이유

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규모를 파악하여,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성능위주설계의 충분한 검토·평가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,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정보공개를 통해 이용자 알권리를 제공하고,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방법을 마련하며, 소방시설 외관점검표(세대 점검용)의 점검내용에 정상, 불량 외에 해당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특수가연물의 저장·취급 계획서를 제출
(안 제3조)

1) 건축허가 단계에서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규모를 판단하여, 소방시설 설치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

2)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결과(“24.8.6.)

나. 성능위주설계 검토·평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(안 제5조,제6조)

1) 현행 업무처리기간으로 성능위주설계 안전성 검토 및 조치기간 부족

2) 화재·피난시물레이션 결과분석, 건축 피난방재의 적정성, 기술공법 적용사례 증가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 필요

나.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기간 연장 및 스프링클러설비

설치여부 공개(안 제25조)

- 1) 부천 숙박시설 화재(‘24.8월)를 계기로 이용자가 쉽게 스프링클러설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
- 2)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자체점검 결과외에 스프링클러설비 보유여부를 추가함.

다.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점검방법 마련(안 별표3)

- 1) 숙박시설과 같이 24시간 운영되고, 투숙객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객실의 점검 어려움에 대한 대책 필요
- 2) 관계인에게 미점검 내역과 점검방법을 안내하고, 관계인은 해당 구역의 점검을 완료하여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.

라. 아파트 세대점검 서식 및 관리업 등록수첩 서식 보완(안 서식 제23호 · 제36호)

- 1) 아파트 세대점검시 양호, 불량 외에 해당사항 없음을 추가하여 점검자가 모든 체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
- 2)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의 수첩크기의 오류사항을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계획서(공장, 창고에 한한다.)

제25조 중 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”을 “관계인”으로, “보고한”을 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”으로, “30일 이상”을 “게시하고, 다음번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일까지”로 한다.

별표 3의 비고 4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관리업자는 자체점검 기간 중 특정소방대상물 일부가 24시간 운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방법과 함께 관계인에게 알리고, 관계인은 불가피하게 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그 부분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, 같은 서식 및 같은 서식 중 “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”를 각각 “130mm×80mm[백상지(150g/m²)]”로 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이후 6개월간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
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(제25조 관련)

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									
•대상물명	:								
•주소	:								
•점검구분	[] 작동점검				[] 종합점검				
•점검자	:								
•점검기간	년 월 일			~	년 월 일				
•보유시설	스프링클러설비 [] 설치(총 ~ 총) [] 미설치								
•불량사항	[] 소화설비			[] 경보설비			[] 피난구조설비		
	[] 소화용수설비			[] 소화활동설비			[] 기타설비 [] 없음		
•정비기간	년 월 일			~	년 월 일				
					년 월 일				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를 게시합니다.									

※ 비교: 점검기록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.

가. 규격: A4 용지(가로 297mm × 세로 210mm)

나. 재질: 아트지(스티커) 또는 종이

다. 외측 테두리: 파랑색(RGB 65, 143, 222)

라. 내측 테두리: 하늘색(RGB 193, 214, 237)

마. 글씨체(색상)

1) 소방시설 점검기록표: HY헤드라인M, 45포인트(외측 테두리와 동일)

2) 본문 제목: 윤고딕230, 20포인트(외측 테두리와 동일)

본문 내용: 윤고딕230, 20포인트(검정색)

3) 하단 내용: 윤고딕240, 20포인트(법명은 파랑색, 그 외 검정색)

소방시설 외관점검표(세대 점검용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대상명	00아파트	점검자	☐ 입주자 ☐ 소방안전관리자 (인)
동호수	동 호		
점검일	년 월 일	전화번호	

점 검 항 목			점 검 내 용		
소화 설비	소 화 기	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용기 변형 · 손상 · 부식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안전핀 체결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(10년) 적정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자동확산 소화기	설치상태 및 외형의 변형 · 손상 · 부식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	소화약제용기 지시압력계의 정상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수신부의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스프링클러	헤드 변형 · 손상 · 부식 유무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경보 설비	자동화재 탐지설비	감지기 변형 · 손상 · 탈락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가스누설 경보기	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피난 설비	완강기	피난기구 위치 적정성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완강기 외형의 변형 · 손상 · 부식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	피난기구 위치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유무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지장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기타 설비	대피공간	방화문(방화구획)의 적정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적치물(쌓아놓은 물건)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경량칸막이	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		적치물(쌓아놓은 물건)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	☐ 정상	☐ 불량	☐ 해당없음
비 고		비고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· 구조 · 용도 및 소방시설의 상황 등이 이 표의 항목대로 기재하기 곤란하거나 이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.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) ① (생략)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(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③ ~ ⑦ (생략) 제5조(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·평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검토·평가를 요청받은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<u>20</u> 일 이내에 평가단의 심의·의결	제3조(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「 <u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계획서(공장, 창고에 한한다.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5조(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·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30</u> 일 -----

을 거쳐 해당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를 검토·평가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·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심의·의결을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검토·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)

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·평가,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“20일 이내”는 각각 “14일 이내”로 본다.

제25조(자체점검 결과의 게시) 소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30일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 30일 -----
-----.

제25조(자체점검 결과의 게시) 관

<u>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<u>30일 이상</u> 게시해야 한다.</u>	<u>계인</u>----- ----- ----- <u>소</u> <u>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 <u>게시하고, 다음번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일까지</u> ---.
---	--